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제 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24.7.31.)으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에 따라 시행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 나.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 신청방법·발급·보완요청 등 절차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 다. 인증제 유효기간 설정(5년), 연장 및 절차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 라. 인증제 신청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 마. 인증제 업무 위탁의 근거 마련(안 제15조의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부처 합의 전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이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이라 한다)을 하려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평가하여야 한다.

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 구축 여부
2. 매입 또는 판매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단계별 등급 기준 마련 및 게시, 안내
3. 매입 가격 또는 매입가격대 안내
4. 판매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구성품 상태 안내
5. 반품 및 환불, 교환 조치 방안 안내
6. 성능확인서 또는 보증서,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발급
7. 국내 통신서비스 가입 또는 이용 제약 여부 확인

8. 판매기록 작성 및 보관

9. 기타 이에 준하는 이용자 보호조건

제6조의3(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신청)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서에 제6조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한 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6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등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

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4(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6조의3을 준용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10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9조”를 “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실·도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확인 업무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6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이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평가하여야 한다. 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 구축 여부 2. 매입 또는 판매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단계별 등급 기준 마련 및 게시, 안내 3. 매입 가격 또는 매입가격대 안내 4. 판매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구성품 상태 안내 5. 반품 및 환불, 교환 조치 방안 안내 6. 성능확인서 또는 보증서,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발급 7. 국내 통신서비스 가입 또는

<신 설>

이용 제약 여부 확인
8. 판매기록 작성 및 보관
9. 기타 이에 준하는 이용자 보호조건
제6조의3(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신청)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심
거래 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서에 제6조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신
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
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신청
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한 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
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신 설>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
한 결과 제6조의2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
용이 불분명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등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
려야 한다.
제6조의4(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
간 등) ①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
장받으려는 자는 인증의 유효기

	<u>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인</u> <u>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u> <u>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u> <u>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6조</u> <u>의3을 준용한다.</u>		
<u>제14조의2(수수료) 법 제10조제2</u> <u>항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u> <u>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u> <u>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과학기</u> <u>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u> <u>시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u> <u>통신부장관[법 제10조제3항에</u> <u>따라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u> <u>「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u> <u>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u> <u>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u> <u>회”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u> <u>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게 수</u> <u>수료를 내야 한다.</u>	<u>제14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u> <u>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u> <u>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u> <u>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10조제</u> <u>3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업</u> <u>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u> <u>기관을 말한다)에게 수수료를</u> <u>내야 한다.</u> <u>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u> <u>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u> <u>려는 자</u> <u>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고</u> <u>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u> <u>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u> <u>하려는 자</u>	임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 선설비 보유사업자에 대한 각 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1. 2.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제10 조제2항에 따른 분실·도난 이 동통신단말장치의 확인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 한다.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 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 회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중 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 래 사업자 인증 업무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실 ·도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확인 업무
<u>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u>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u> <u>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u> <u>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u>	<u>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u> <u>----- 법 제</u> <u>19조제1항-----</u> <u>-----</u>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연 락 처	(044) 202 - 6657